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2.28)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2.28(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2.2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3층)만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동일자로 공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국민임대주택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국민·영구 중 택1),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일
		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26A	272	26.25	13.9134	2.4892	18.2829	60.9355	272	81	191	803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23.02 (예정)
26B (주거약자)	26	26.25	13.9134	2.4892	18.2829	60.9355	26	-	26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국민임대·영구임대) 간에 중복신청은 불가하며(국민·영구 중 택1)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3층)**만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26A	2,425,000	121,250	2,303,750	48,240	13,852,000	692,600	13,159,400	118,470
26B	2,425,000	121,250	2,303,750	48,240	13,852,000	692,600	13,159,400	118,470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2.02.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2.28.) 현재 주민등록 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구성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 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table>
<tr><th>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소득</td><td>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 120%, 2인 110% 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90%, 2인 80% 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1인 70%, 2인 60% 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1인가구, 2인가구 각각 20%p, 10%p 상향 적용)
<table>
<tr><th>가구원수</th><th>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th><th>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th><th>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th></tr>
<tr><td>1인가구</td><td>2,248,479원 이하</td><td>2,890,901원 이하</td><td>3,854,536원 이하</td></tr>
<tr><td>2인가구</td><td>2,906,622원 이하</td><td>3,875,496원 이하</td><td>5,328,807원 이하</td></tr>
<tr><td>3인가구</td><td>3,209,283원 이하</td><td>4,492,996원 이하</td><td>6,418,566원 이하</td></tr>
<tr><td>4인가구</td><td>3,600,405원 이하</td><td>5,040,566원 이하</td><td>7,200,809원 이하</td></tr>
<tr><td>5인가구</td><td>3,663,036원 이하</td><td>5,128,250원 이하</td><td>7,326,072원 이하</td></tr>
<tr><td>6인가구</td><td>3,889,913원 이하</td><td>5,445,878원 이하</td><td>7,779,825원 이하</td></tr>
<tr><td>7인가구</td><td>4,116,789원 이하</td><td>5,763,505원 이하</td><td>8,233,578원 이하</td></tr>
</table>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td></tr>
<tr><td>자산</td><td>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기준에 포함되나,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함.
</td></tr>
</tabl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26A	81	27	27	27	별도배정 호수 없음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가. 우선공급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군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추첨

②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3. 신청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불일치 시 계약해지)**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로 배점을 받으시려는 경우 은행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2000106]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③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신혼부부)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나. 일반공급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선공급 시 일반공급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다. 공급형별 배점기준표

①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신혼부부 제외)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기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최종 전입한 날로부터 기간 산정)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3. 신청자격 참조)**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점(최대 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②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 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동점 시 추첨)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점	3명 이상
		2점	2명
		1점	1명
	세종특별자치시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3점	24회 이상
		2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1점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내
		2점	3년 초과 5년 이내
		1점	5년 초과 7년 이내

5.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2.28.)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1. **신청자** 나이 (2점)	70세이상	2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이 2인이상인 경우		1
3.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세종특별차지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일시에 모집공고한 동일단지의 국민임대와 중복 신청 불가**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전자계약	현장계약
우선공급 일반공급	'22.03.28~04.01 (10:00~17:00)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3층	'22.07.04(16:00이후) LH청약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누리집	'22.07.11~12 (10:00~17:00)	'22.07.13~14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3층) → 입주자격 조사 (세종특별자치시) → 입주대상자 발표 (LH청약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누리집)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무작위로 배정되며, LH청약센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신청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0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사 양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별지1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별지2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3호)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별지5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4호)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 1통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로 배점을 받으시려는 경우 은행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별지6, 6-2호 포함)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2.07.04(월)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및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혹은 당첨자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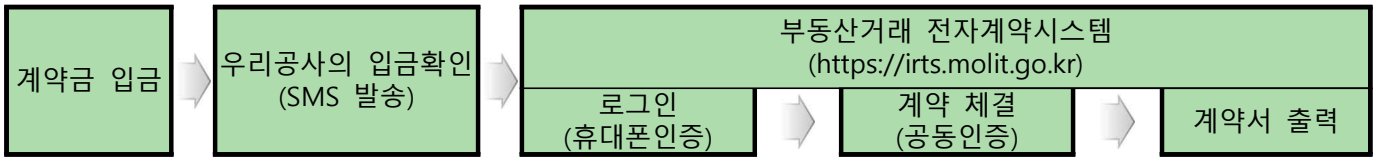
■ 계약안내

○ 전자계약〔계약기간 : 2022.07.11.(월) 10:00 ~ 07.12.(화)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 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2022.07.13.(수)~07.14.(목) 10:00~16: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정부·지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장소, 구비서류 및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주의사항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하는 경우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해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구분	유의사항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시 신청 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여건**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 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

구분	유의사항
	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대학용지 조성공사 등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여건**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옥상 및 옥탑에 TV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내에는 펌프실, 저수조, 휀룸,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용 전기시설물(전기실, 발전기실)은 지하주차장내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 부근에 위치한 804동에 비상발전기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매연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무선통신보조설비 등)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내 동 주현관, 단지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801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안테나), 801,804,805,806동 옥상,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용 옥외안테나(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개소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 득함(2021년 3월 18일) • 태양광설비는 801동부터 806동까지 전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이 아파트 각 동의 자하주차장 동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복도천장 내부가 기계설비(스프링쿨러 등) 및 전기, 통신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급속,완속충전기)이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주변에는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시설물 등(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자동크린넷이 일부동의 전, 후, 측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투입구 위치는 단지 내 지반 높이에 따라 계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지하주차장 출차주의등(소음,빛)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전세대 전면부는 발코니 입면분할창으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고, 일부세대의 후면부(복도측)는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에는 급수급탕분배기와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장 공간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통합분전반(전기, 통신)은 세대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급수, 온수 계량기는 복도내 PD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는 조립식 욕실이 설치되고 욕실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상부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앞 PD내 난방열량계가 설치되며, 점검구로 난방열량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유닛장비, 배수관, 우수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자동크린넷등 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단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휀 가동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급수, 급탕, 난방, 소방 등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PIT층의 출입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PIT층 및 옥상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휀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및 시험을 위한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에는 동별 구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및 제연댐퍼가 동별로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되는 냉방용 에어콘의 가동시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후면부는 타일시공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후면부 및 하부는 도배 및 바닥장판지 시공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자동크린넷시설 포함)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 일부는 합성수지창호(PL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계단실은 AL-FIX(고정창)과 프로젝트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판로지원법』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권고』에 의거하여 단지 내 승강기 설치업체가 선정되며 업체는 새한엘리베이터입니다. • 803동(영구임대)은 세대 내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됩니다. • 본 단지 진·출입시 인접(인근) 회전(원형) 교차로 이용함(U턴 등)을 인지·수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인접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전력시설물, 통신시설물, 수도시설물, 공동기반 시설물,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일반 사항**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 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입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및 커뮤니티 공간(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주민운동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마련하였습니다. • 단지내 주출입구/부출입구에는 보안사항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종시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쓰레기 투입시에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가연성,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환기시스템용 환기캡이 세대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제 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 청취 절차 등 포함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전·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모든 안내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 (☎ 320-2161~3)로 문의바랍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해당없음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1. 내구성	해당없음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3. 중수도 설치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세대내 일조확보율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11. 음식물 쓰레기 저감	★★
	12.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1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14.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15. 우수이용	★★★★
	16.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17.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18. 자연지반 녹지율	★★★
	19. 생태면적율	★★
	20.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2. 자연 통풍 확보 여부	해당없음
	2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해당없음
	2. 대중교통의 근접성	해당없음
	3.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4. 도시지역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5.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해당없음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사회적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해당없음
	9. 사회적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해당없음
	10.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해당없음
	14. 방범안전 콘텐츠	해당없음
화재·소방 및 피난안전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해당없음
	2. 제연설비	해당없음
	3. 내화성능	해당없음
	4. 수평피난거리	해당없음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해당없음
	6. 피난설비	해당없음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보일러	미적용(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고효율)	적용
	간설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고효율)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벽체 및 창호 단열성능	외벽(직접면함)	경질우레탄폼 1종3호 145mm
	외벽(간접면함)	경질우레탄폼 1종3호 100mm
	창호(직접면함)	5mmLE+12mmAR+5mmCL 5mmLE+12mmAR+5mmCL
	창호(간접면함)	5mmCL+6mmAir+5mmCL 5mmCL+6mmAir+5mmCL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4-1M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극동건설(주) 외 9사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바탕건축사사무소 ㈜나로이엔씨 ㈜종합건축사사무소창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현장 여건상 천장형으로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44-860-7478 (주택사업2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9일(준공 6개월 전)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 전까지 편의시설 설치완료가 불가할 수 있음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5.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 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 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6.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리플렛 배부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 .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3층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28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별지 제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최초공급용) 〔앞 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전용면적	26.25㎡(26A)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음
	우선공급		□(시행규칙 별표3 2호 가목)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 90퍼센트, 2인 80퍼센트) 이하 인 자 □(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 수급자로서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혼인기간 3년 이하,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하 □ 혼인기간 5년 초과 7년 이하) ① 혼인신고일(. .) ②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거주여부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시행규칙 별표3 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일반 공급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만65세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1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1,5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최초공급용] 〔뒷 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우선공급 중 다목_신혼부부에 적용)

구분 및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3점	**2점**	**1점**			
미성년자녀수 (태아포함)	3명이상	2명	1명			
세종특별자치시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6회이상			
혼인기간	3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 우선공급 중 가목_국가유공자등, 나목 귀환국군포로에 적용)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이상~5년 미만	**24**			
	5년이상~10년 미만	**26**			
	10년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만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시혼부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시혼부부
	총점 점				_____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기타증빙서류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7-2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table>
<tr><td colspan="7">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td><td>접수번호</td></tr>
<tr><td>주택신청
유형</td><td colspan="2">단지명</td><td>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td><td>전용면적</td><td>26.25㎡(26B)</td><td>가구원수</td><td></td></tr>
<tr><td rowspan="4">신청인</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3"></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5">시 구 동 번지 호</td></tr>
<tr><td colspan="2">전화번호</td><td colspan="3">휴대전화() -
집 전 화() -</td><td>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td><td>년 월 일</td></tr>
<tr><td colspan="8"></td></tr>
<tr><td rowspan="7">신청
순위</td><td colspan="2">주거약자용</td><td colspan="6">□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음</td></tr>
<tr><td rowspan="6">일반
공급</td><td>1순위</td><td colspan="6">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td></tr>
<tr><td>2순위</td><td colspan="6">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td></tr>
<tr><td>3순위</td><td colspan="6">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td></tr>
<tr><td>4순위</td><td colspan="6">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td></tr>
<tr><td>5순위</td><td colspan="6">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td></tr>
<tr><td rowspan="2">주택 및
자산
현황</td><td colspan="3">□ 무주택세대구성원</td><td colspan="2">□ 총자산가액 이하</td><td colspan="2">□ 자동차가액 이하</td></tr>
<tr><td colspan="7"><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1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1,500 만원 이하,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td></tr>
</table>

[별지 제1-2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최초공급용]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용 적용)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신청자 나이** (2점)	70세 이상	**2**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1점)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최초/추가공급)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의 타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①청약 접수일, ②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제5호 서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정보·금융정보	□	상기 (1), (2)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1), (2)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6-2호 서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 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